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[ ] 부동산중개업 [ ] 분사무소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 [ ]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

※ 해당하는 곳의 [ ]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체류지)	
	전화번호	

개업공인중개사 종별	[ ] 법인 [ ] 공인중개사 [ ]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

중개사무소	명칭	등록번호
	소재지	
	전화번호	

신고사항	휴업	휴업기간	~	(	일간)
	폐업	폐업일			
	재개	재개일			
	휴업기간 변경	원래 휴업기간	~	(	일간)
		변경 휴업기간	~	(	일간)

「공인중개사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

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중개사무소등록증(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하며,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재	➔	완료
신고인		시・군・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・군・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・군・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・군・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